

현행 화재조사 및 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Existing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김형두[†]

Hyung-Doo Kim[†]

동국대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2006. 10. 10. 접수/2007. 2. 14. 채택)

요 약

소방기관의 기본업무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업무 중 구조·구급분야는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분야가 화재조사와 수사 관련업무라고 볼 수 있다. 화재조사는 소방행정 중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분야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소홀하게 인식되어 왔다. 화재조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전담기능도 부족하여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와 수사체계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화재조사와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와 수사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적으로는 과학적 화재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와 수사에 있어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조사 소방공무원에게도 발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여 화재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A primary task of fire department is maintaining public safety, system maintenance and welfare improvement by protecting life, body and property of a people through prevent and extinguish of the fire in emergency. Rescue part of those affairs has supported by the people but affairs related to the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could not get it. Although fire examination is a very important part of fire department administration, it has been understood indifferently due to lack of awareness and concern. There are no scientific fire examination because of lacking education study and the whole responsibility capacity about it. There are many things have to be improved at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Especially, establishment of the whole responsibility post is urgent through assuring professionals to improve accuracy of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Equipment which can do scientific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have to be fully furnished. Efficiency of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has to be increased through improving law related to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giving rescuers investigation right. Through this, it systematically have to be good for fire prevent.

Keywords: Fire, Fire examination, Fire investigation, Fire administration

1. 서 론

소방기관의 기본업무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업무 중 구조·구급분야는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소방이 전문기관으로서 공적인 능력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화재조사 관련업무라고 볼

[†]E-mail: kh4064@hanmail.net

수 있다.¹⁾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주관부서인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를 담당해 온 것은 소방법이 제정되던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50여년간 소방관서의 화재조사에 따른 노하우나 관련자료가 미약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소방관서에서 행하는 화재조사가 유사화재의 예방과 소방행정 통계 정도로만 사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화재조사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보다 화재현장에 최초 도착하고 진압하는 소방관서의 원인조사서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는 정확성이나 신뢰성면에 있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화재 중에는 방·실화에 의한 범죄가 존재하게 되는데 경찰과 소방간의 원활한 협조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초기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신속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확한 화재조사결과를 명확한 소방행정지표설정과 완벽한 화재방호대책을 마련하고 방·실화범죄의 신속·정확한 색출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근간이 되므로 그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 전문자격요원, 첨단기자재, 화재시험연구소, 종합이론서 및 표준처리절차 등을 확보·운영하는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조물책임법(PL법: Product Liability Law)의 시행에 따라 제조물의 생산자와 피해자간의 법적 분쟁과 화재진압업무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소송에 있어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에 의하여 얻어진 각종 정보와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내지 과학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화재조사를 전담하고 방·실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경찰, 소방, 보험기관은 물론이고 제조물의 생산자, 산업시설의 관계인·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 그리고 이 분야에 민간전문기관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화재조사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본 논문은 화재 발생하고 있는 화재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화재조사와 수사에 대한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화재조사·수사업무가 보다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화재원인규명의 정밀화와 과학화·전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화재발생의 근본적인 억제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우리 소방업무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그 신뢰성을 확고히 하는 데 그 목적으로 두었다.

2. 화재발생 추이

우리나라에서 화재발생은 그간 1987년 1만건을, 1994년 2만건을, 1998년 3만건을 넘었으며, 2001년 36,169건을 정점으로 2003년 31,372건, 2004년 32,372건 증가 또는 감소를 반복하는 이른바 널뛰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반이후 약 20년간 화재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에는 경제발전우선정책과도 관련이 있지만 산업발전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생활환경의 변화와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급격한 규제완화정책의 추진, 소방기관의 대책이 화재예방보다 진압에 치중하고 있는 점, 화재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아서 그간 유사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즉소화재 발생보고서’와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화재의 원인은 전기, 방화, 가스, 담배, 유류, 불량난, 불티, 기타로 분류하여 이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 방화, 가스의 경우 세부원인까지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원인은 전기의 경우에는 합선, 과부하, 누전, 정전기, 기타 전기추정으로, 방화인 경우에는 불만해소, 가정불화, 신병비관, 싸움, 정신이상이며 가스인 경우에는 폭발, 과열, 누설, 전도, 기타이다.

1981년 이후 주요화재원인 추이를 보면, 줄곧 전기화재가 1위, 담뱃불화재가 2위, 방화가 3위였으나 2005년에는 담뱃불 화재와 방화가 자리를 바꾼 점이 특색이다. 전체화재의 30% 이상을 전기화재가 차지하고 있고 방화는 최근 증가 경향이 뚜렷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3. 화재조사와 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화재조사와 수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3.1.1 화재조사와 수사의 의의

(1) 화재조사의 의의

‘화재조사’란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¹⁾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 업무 발전방안,” 중앙소방학교(www.fire.or.kr) 자료실 참조.

²⁾소방방재청, 2005년도 화재통계연감, 2006. 3면 이하 참조.

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³⁾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조사와 화재피해조사로 구분된다.⁴⁾

화재원인조사는 ① 발화원인 조사(화재발생과정, 발화지점 및 발화원), ②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발견동기,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행동과정), ③ 연소상황 조사(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요인 등), ④ 피난상황 조사(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⑤ 소방시설 등 조사(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등을 말한다.

화재피해조사는 ① 인명피해조사(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② 재산피해조사(소실피해: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수손피해: 소화활동으로 발생한 수손피해 등, 기타피해: 연기, 물품반출, 화재 중 발생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등) 등을 말한다.

법정 화재조사기관은 검찰·경찰, 소방, 보험회사 등이 있으나 각각 그 조사목적에 달리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방화·실화범죄 수사차원에서 범행원인과 동기 및 수법 등에 중점을 둔다. 소방관서는 화재의 예방·경계·진압행정에 필요한 대책강구차원에서 발화원인과 화재성장확대요인 및 화재발생전의 안전관리실태와 화재당시의 초동대응상태 등에 중점을 두며, 보험회사는 약정서에 의한 보험금지급차원에서 손해액 산정을 중점을 둔다.⁵⁾

(2) 화재수사의 의의

일반적으로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고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인을 발견·확보하며 그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수사기관을 활동을 가리킨다. 그리고 수사활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수사절차라고 한다.⁶⁾

이렇게 보면 화재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피의자(발화자)를 발견·보존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존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⁷⁾

화재수사의 목적은 공공의 안전보호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형법 제164조부터 174조까지 방화와 실화의 죄에 규정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상 책임을 규명함에 있다. 방화와 실화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수사 등을 통하여 화재원인을 밝히고 발화경로 검증, 감식, 감청, 압수, 수색, 피의자의 진술, 심문, 피의자발견·보존 등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피의자(발화자)를 수사하는 것이다.

화재감식⁸⁾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계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통하여 수사하게 되고, 방화 또는 실화의 귀책사유가 판명될 때에는 수사를 종결하고 이들 사건 수사서류일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 화재조사와 수사와의 관계

화재조사와 수사는 그 주체나 목적에 있어서 구별할 수 있으나,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이 먼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그 현장을 보존하게 된다. 화재수사는 소방대의 화재진압활동 개시와 동시에 전개되어야 증거확보가 용이하고 화인규명과 범행동기 등을 밝히는데 가장 유리하고 수사의 성공률이 높다. 또한 화재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방·실화범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를 예정하여 소방기본법은 제31조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

³⁾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2004. 6. 1. 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14호).

⁴⁾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조.

⁵⁾중앙소방학교, 테마 소방학 강의, 2001, 465~466면.

⁶⁾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35면.

⁷⁾정찬택, “방화·실화범의 수사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8면.

⁸⁾화재감식이란 소방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하지만(김만우, 화재조사, 신광문화사, 2004, 60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 제3호), 수사에 있어서 화재감식이란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화재현장에 남아 있는 총체적 잔유물 검사로 화재원인을 찾아내고 공소제기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감식후에는 수집한 증거들을 감정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감정이라고 한다.

Table 1.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구분	소방	경찰
목적	· 화재연소현상 분석 통계화, 예방 및 진화를 위한 행적목적	· 정확한 증거수집, 방화 및 실화범 체포, 공소제기 수사 목적
법적 근거	· 소방기본법 제29조~제33조	· 형법 제164조~176조 · 형사소송법 제195조~199조
담당 인력	· 소방방재청: 화재조사팀 4명 · 시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 화재조사계 3~5명 · 소방서: 방호구조과 화재조사계 3~4명	· 경찰청: 형사와 강력계(검무) · 경찰서: 수사와 당직형사
업무 능력	· 전문능력 미확보 · 화재조사관 유자격자	· 방·실화 담당 검사의 지휘 · 전문가의뢰, 관계자 진술 등 수사
원인 조사	· 모든 화재에 대한 조사: 화재상황, 연소경로, 목격자 진술 의존 · 화재관계인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시 발급자료 활용 · 통계관리로 소방시책 추진시 활용	· 전문가 감식, 관계자 동태 조사 소방관의견 참조수사
피해 조사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의거 산정 · 화재관계인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시 발급자료 활용 · 통계관리로 소방시책 추진시 활용	· 관계자 진술의존, 소방서 피해산정내용 반영 · 소방조사내용이나 피해관계자에게 확인 후 범 죄형량 산정자료로 활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2조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2 화재조사와 수사의 법적 근거

(1)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a) 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권

소방기본법 제29조는 화재원인과 피해조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제1항), 이 규정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⁹⁾ 이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주체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서 그 하명을 받은 소속 직원을 포함하고, 조사대상은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이며, 조사시기는 화재가 발생한 때이다.

(b) 강제조사권

강제조사권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제30조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¹⁰⁾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이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제2항),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이 경우에 관계인이 질문권을 거부하여 묵비권을 행사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러나 묵비권은 기본인권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사법적으로도 고문방지를 위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강제조사와 관련하여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⁹⁾ 화재조사업무는 1950년 3월 내무부령 제10호 '소방조사규정' 제11조에 의거 화재발생일시, 장소, 피해자, 소실종류, 피해액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제정된 '소방법' 제7절에 화재의 조사를 신설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얻어 소방기관 독자적으로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¹⁰⁾ 여기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관계공무원이란 화재조사관련직원 및 그 감독자 등을 말하며, 관계장소는 보다 넓게 해석되어 화재장소 뿐만 아니라 관련 본사·지점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이른바 ‘비밀누설금지’ 규정이다.

(c) 경찰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소방기본법 제31조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제1항). 방화와 실화에 해당하는 범죄수사는 사법기관의 고유한 업무로 소방기관의 화재조사과정과 중복 내지 경합할 우려가 높다. 이점에 대하여 본 조항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협조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d)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

소방기본법 제32조는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조사과정은 사람과 증거에 대한 조사를 우선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소방기관의 화재조사는 화재원인과 진행과정을 밝혀 동일 화재의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주안점으로 하고 사람에 대한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조사결과 처리도 경찰은 범죄자 추적, 검거,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소방기관의 화재조사 결과는 화재예방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때문에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는

경찰기관에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e)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소방기본법 제33조는 소방본부·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화재보험회사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사정하고 배상하는데 필요한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협력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¹¹⁾ ‘관계보험회사’는 당해 화재에 의한 피해를 전보하는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회사는 본 조에 의해 소방기관으로부터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를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한에 지나지 않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상 규정이 없으며, 출입검사권이나 질문권 등의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의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¹²⁾

(f)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방재청은 훈령으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함)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조사업무의 체계, 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조사본부의 설치운영, 조사업무처리의 기본사항, 조사업무의 집행, 화재조사서류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화재수사의 법적 근거

(a) 형법

형법상 방화와 실화죄는 형법 제13장(제164조부터 176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방화란 목적물을 소훼하기 위하여 일부러 불을 놓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수단·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목적물에 불을 놓거나 아니면 매개물을 이용해 불을 놓거나 상관이 없다. 실화는 과실로 현주건물 등 방화죄(제164조), 공용건조물방화죄(제165조)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의 물건을 소훼하거나(제170조 제1항), 자기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 또는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제170조 제2항). 방화에 의한 화재의 조사는 방화라는 범죄의 수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방화는 형법상 범죄라는 인식을 깊이 가질 필요가 있다.

¹¹⁾보험회사의 화재조사와 관련한 법률로는 보험업법 제204조 내지 205조, 상법 638조 내지 687조,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¹²⁾이창화, “화재조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5면.

(b) 형사소송법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게 된다. 방·실화범죄의 경우 현행 법규상 당연히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경사·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소방공무원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범죄에 대하여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c) 화재수사절차

화재사건수사는 화재가 인지됨에 따라 개시되며 화재진압활동과 병행하여 행하여지는 화재출장시의 수사와 진화후의 수사로 구분된다.¹³⁾ 출장시 조사활동은 연소 중인 화재상황의 관찰과 정보수집활동에 주력하여 화재발생의 기초단계의 상황을 조기에 파악함에 그 목적이 있다. 화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화후의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의 상황을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진화후의 수사는 화재현장의 화재 상황을 가지고 발화원·경과·착화물·출화개소를 명확히 하여 출화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연소확대의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선입견에 빠지지 말고 합리적인 판단과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진실규명에 노력하여야 한다.

3.2 화재조사와 수사체계의 문제점

3.2.1 인적·물적 측면

(1) 화재조사와 수사전담부서의 미비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화재의 출동과 동시에 화재발생 상황에 대한 증거물의 확보, 소방대상물의 내역, 사진, 비디오 촬영, 감식, 감정 및 실험판명 보고 등 일련의 행동을 하여야 하며 현장에 남아 있는 물건의 상태를 관찰하고

직접기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고도의 종합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행정관청의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이다. 또한 사후적으로 법원, 검찰, 경찰, 보험회사,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관계자 및 화재로 인한 상호관계인 등의 사법적·민사적 행위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하며 소방관서의 화재예방, 진압활동 등 소방정책과 소방행정의 개선자료 내지 지표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소방당국이 과학적 화재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인력이나 전문부서를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종전 우리나라 소방기관의 화재조사는 전담부서 없이 화재진압업무 담당부서인 방호과가 방호분야에서 수행하여 오다가 2002년도부터 대부분의 시·도의 본부단위에 화재조사팀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각 시·도의 일선 소방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이나 부서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조사의 전문성 부족에 의한 신뢰성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관서도 화재수사 전담부서가 있지 아니하고 국내 경찰교육기관에서도 화재수사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충분히 시킬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경찰기관의 화재수사 전문기능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화재조사와 수사의 전문인력 부족

화재조사는 소방관련분야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요구되는 중요한 전문분야이다. 화재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게 위해서는 화재전문조사원과 수사요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업무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여 교육인력 선정부터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교육후에도 다른 분야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소방교육기관(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소방교육대 등)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이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

¹³⁾ 화재현장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검찰청, 과학수사편람, 1993, 497면 이하; 양태규, 과학수사론, 대왕사, 2004, 540면 이하 참조.

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화재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교육기관은 중앙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광주소방학교, 경기소방학교 등이다. 특히 중앙소방학교에서는 화재조사전문과정이 개설되어 화재조사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연구실에서 화재전문화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¹⁴⁾ 여기에서 일선경찰관서 과학수사반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인 화재감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는 폭발 및 화재감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보험사 및 손해사정회사 화재조사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인력이 배출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소방의 경우 소방화재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화재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찰수사기관 역시 수사인력 부족으로 원인미상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화재조사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화재발생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을 꼭 필요로 한다. 반면 화재발생관계자의 경우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하여 실의와 당혹감, 화재피해복구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 더불어 화재조사에 대한 진술, 경찰수사에 대한 진술, 화재증명원 신청시 소방관서의 방문, 화재원인규명 지연 또는 규명불가에 따라 화재보험보상금이 지연지급 되거나 지급불가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술의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된다.¹⁵⁾

경찰의 경우에도 한 달에 4~5시간의 지방청 교육만으로 정확한 확인조사를 위한 전문지식을 얻기 어렵다. 그리고 방화사건의 경우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부족으로 정확한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 누전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⁶⁾

(3) 화재조사 전문장비의 부족

화재원인조사에 있어 경험, 예측, 육안,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날로 증가하는 복잡 다양한 화학물질과 가전제품, 건축물, 산업시설 등은 과학적 감식장비가 구비되지 않으면 정확한 원인을 알아 낼 수가 없다. 또한 화재현장 도착시 원인 제공을 위한 증거가 화재로 인하여 대다수 소실되고 화재의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전문장비의 구비는 화재조사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방관서의 화재원인조사 장비의 보유실태는 화재원인 분석과 전기화재 판정

Table 2. Fire examination equipment

구분	기자 재명
발굴용구 (1종 세트)	망치, 폴라이어, 팬치, 니퍼, 몽키스패너, 드라이버세트, 탄화심도계, 버니어캘리퍼스, 가위, 브러시, 핀셋(대), 핀셋(소), 줄톱, 나무톱, 굵게, 스크프(모종삼형), 칼, 줄자(2종), 검전기, 확대경, 붓
기록용 기기 (13종)	고속카메라세트(카메라, 마이크로렌즈, 후레시, 삼각대, 가방), 디지털카메라세트(카메라, 스마트미디어, 예비용배터리, 전용인화지), 카메라프린터기, 비디오카메라세트(카메라, 예비배터리, 삼각대, 가방), VTR, TV, 녹음기, 거리측정기, 휴대용제도기, 마이크로메타(2종), 저울, 비중계, 초시계
감식용 기기 (45종)	확대경, 가스측정기, 테스터기, 절연저항계, 후크메타, 검류계, 정전기측정장치,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접지저항계, 누설전류계, 가스채취기, 내압시험기, 전력계, 인화점측정기, 실체현미경, 미량용접측정기,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 프린터기, 휘스톤브리지, 발화점측정기, 온도기록계, 비교현미경, 발광분경분석기, 분광사진투영기, 선반, 정밀저울, 항온습습기, 금속현미경, 스팩트라이트,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자기온습습도계, 자기풍향풍수기록계, 초음파세척기, 마이크로경도 시험기, 주사형 전자현미경, 적외선열상장치, 원심분리기, 로드셀, 적외선온도계, 조도계, 회전계, 진동계, 데이터기록계
조명기기 (5종)	발전기, 손전등, 이동용조명기, 밧배터리, 투광기
그밖의 장비(6종)	화재조사차량, 노트북컴퓨터와 주변장치, 냉장고, 소화기, 시료보관용 기자재, 발굴복장 등

¹⁴⁾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www.nisifire.com) 화재전문화교육과정 참조.

¹⁵⁾이점에 대한 지적은, 정찬택, 앞의 논문, 89면 참조.

¹⁶⁾안성일, “방화현장의 실태”,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2006. 1, 19면.

에 필요한 전문감식용 장비는 물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화재조사 기자재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¹⁷⁾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하여 전국 156개 소방관서에 24% 정도만 화재감식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또한 규칙에 규정된 대부분의 장비도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실험장비가 많으며, 화재원인을 실제로 조사하는데 필요한 용도와 목적에 부적합한 장비가 많다.

화재조사장비를 확보하게 되면 장비를 보관하고 연구·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보유기준에는 장비품목을 70종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런 장비를 보관하고 연구·실험할 공간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다.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여 장비구매 사업을 선행하다가 화재조사분석실이 확보되기까지 창고에 쌓아두고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¹⁹⁾

3.2.2 운영적 측면

(1) 화재조사에 대한 중요성 미인식

화재조사결과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방에 대한 국민의 공신력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문제는 물론 제조물책임법²⁰⁾의 제정·시행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무조건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종래에는 제품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²¹⁾ 예컨대 여러 개의 제품이 가동 중인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모든 제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각 제조업체는 자신의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제조업체의 책임이 무거워지며, 기업경영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²²⁾

따라서 화재조사자가 법정에서 제조업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및 전문학자와 화재원인에 대한 법적 논쟁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화재조사자가 어떠한 특정회사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원인조사를 하였다면 그 제품제조회사는 회사 및 제품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제품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화재조사자가 화재원인에 대하여 논리적·학술적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면 패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화재조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의 화재조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화재조사 보고제도의 불합리

화재조사 보고와 관련한 현행규정은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화재나 중요대상 화재 또는 특수한 화재 등은 그 조사결과를 규정된 기일 내에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를 자료 화하여 예방행정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조사보고의 독촉문제이다. 통상 화재가 발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상급기관 등에 보고하는 기간은 화재 각지로부터 5일 이내이고, 긴급상황 보고대상 조사결과는 화재발생 각지로부터 7일 이내이며, 다만 화재의 원인 및 피해액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는 총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규정 제47조). 또한 화재조사의 진행상황별로 최종·중간(수시)·최종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규정 제45조 제2항).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및 중요화재는 화재원인 및 피해액 판정에 많은 인원과 시간을 요하게 되고 감식·감정·실험·재조사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보고기한 내에 규명할 수 없는 화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나 상급기관은 화재 발생시 이러한 보고규정의 보고기한은 무시되고 현장에 도착하여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를 독촉한다. 이러

¹⁷⁾이상호, “화재원인조사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소방학교(www.fire.or.kr) 자료실 참조.

¹⁸⁾정찬택, 앞의 논문, 90면.

¹⁹⁾이창화, “화재조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소방학교(www.fire.or.kr) 자료실 참조.

²⁰⁾제조물책임법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²¹⁾다만 소비자는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된다(대판 2004. 3. 12. 2003다16771).

²²⁾우성천, “PL법 시행에 따른 화재조사행정의 개선방안”, 중앙소방학교(www.fire.or.kr) 자료실 참조.

한 보고독촉으로 부정확한 조사결과를 초래하여 사후 근본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주게 되어 화재조사 결과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의심받게 되는 현상을 낳게 한다.

둘째는 보고서류의 복잡화이다. 화재서류의 세분화에 따른 기재사항의 복잡화와 한정된 시간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기록유지가 곤란하고 이에 따라 피해조사 서류작성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화재조사 보고서류는 화재발생원인과 경과사항, 연소확대 요인 및 피해상황 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추정하고 판단한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 이를 각종 소방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나, 현장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화재의 정도와 화인의 증별에 대한 사항을 완벽하게 기록·관리하기 어렵다.

(3) 비현실적인 화재피해액 산정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피해액 산정방법은 ‘규정’ 제 34조에 의거 피해액은 피해당시의 자산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구축 하는데 필요한 재조달 가액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 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의 경우에는 관련자 진술 및 소방서 피해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이 관련자의 진술과 피해복구시의 소요비용을 기준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 경찰관서나 보험회사의 화재피해액이 소방관서의 피해액보다 많게 된다.²³⁾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부동산은 별개로 하고 동산은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소실되어 정확한 피해사항의 조사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일선소방관서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예방 및 진압상의 잘못에 대한 책임추궁을 두려워하여 피해액을 축소보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얼마 전까지도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방행정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항목사항 중에 화재발생건수가 많거나 피해액이 많은 경우는 평가점수가 낮게 나오게 함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피해액이 경미한 화재는 화재발생건수에서 제외시키고, 대형화재 시에는 그 피해액을 축소하는 것이 관

행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피해를 축소하는 경향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²⁴⁾

(4) 원인조사와 수사의 이원화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은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화재원인조사는 경찰과 소방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화재 감식업무도 경찰이 담당하고 있어 조사의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선 소방관서의 조사 전담부서가 미비하고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내실 있는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²⁵⁾

소방의 화재조사는 수사차원이 아닌 화재원인 및 피해규모를 확인하여 상황보고, 연소현상의 분석, 통계화로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을 위한 행정목적으로 화재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화재 피해복구 안내 및 화재증명원 발급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방·실화 피의자의 혐의를 규명하고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관계자를 신문하고, 화재를 감식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면서 방·실화 혐의자를 체포하는 등의 수사를 하고 있어 실상 화재피해자의 입장에서 2개의 행정기관(소방, 경찰)으로부터 이중적 조사를 받게 되는 불편이 있다.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운영은 그 목적, 법적 근거, 담당인력, 업무능력, 원인 및 피해조사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 기관 모두 동일장소의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소방에서 실시하는 물적 대상물에 대한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한 조사와 경찰에서 실시하는 주된 수사방법인 인적 조사와 전문감정 의뢰는 업무의 진행과정상 별개의 유리된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통합과정이라는 점에서 두 기관이 중첩되게 업무를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²⁶⁾

또한 현재 방화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화인분석률은 70%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원인불명인 화재사건의 증가는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 경찰과 소방관계자의 허술한 공조체계 등으로 원인조사가 소홀하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재에 대한 보고서도 경찰과 소방당국이 각각 만들뿐 공통된 조사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⁷⁾

²³⁾정찬택, 앞의 논문, 86면.

²⁴⁾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 업무 발전방안”, 중앙소방학교(www.fire.or.kr) 자료실 참조.

²⁵⁾정찬택, 앞의 논문, 84면.

²⁶⁾이창화, 앞의 논문 참조.

²⁷⁾선진국의 경우에는 화재원인 분석률이 90% 이상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과 소방관계자들로 합동수사반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만든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안성일, 앞의 논문, 19면).

3.2.3 법제도적 측면

(1) 소방관련법규상 조사내용 미흡

화재조사기관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며 조사의 범위는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⁸⁾ 소방관서가 법령상에는 명백한 화재조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여러 기관이 조사에 임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화재원인은 수사기관의 것을, 화재피해의 평가는 손해보험회사의 것을 대내·외적으로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손해보험회사는 대부분 화재진압이 끝나고 사후 복구단계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불구하고 화재발생의 초기 상황과 같은 고급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조사자료를 경시하는 실정이라서 사실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화재현상에 대한 상황이나 상태별로 화재조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검증된 조사이론이나 사례에 의한 기준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화재조사 첨단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화재피해액 산정방법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산정방법 역시 까다로워 조사시 이의 적용에 문제가 있고 기준대로 산정 하더라도 발표 이후 손해 당사자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은 화재조사에 관한 상세하고도 권위있는 개별법령 또는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기타 관련법령

소방기본법 외에 화재조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없지만 각기 소관업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관계법령이 집행되고 있다. 경찰·검찰 등과 같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화재조사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하고, 손해사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 ‘주택화재보험 약관 및 화재보험 보통약관’, ‘표준보험요율서’ 등

에 의하고 있다.

기타 조사기관의 관계법령도 역시 각각 그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법령에는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조사자마다 그 기준과 방법이 다르며 착수시간과 종료시간이 다르다. 따라서 화재조사결과 원인과 개요, 피해 추정액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4) 소방공무원의 수사권 부재

화재조사에 대하여 소방에서는 화재조사의 측면으로서, 경찰에서는 수사의 목적으로서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성격상 두 기관이 모두 개입될 수밖에 없으나, 소방에서는 화재조사에 대한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아 화재조사보고는 내부행정 자료에 불과하므로 대외 공신력, 조사범위 등 여러 면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²⁹⁾

소방공무원의 소방사범에 대한 사법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6조 제10호 규정에 따라 소방준감 및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그 소속관서 관할지역내에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범죄에 대하여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화 및 실화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사건이 처리되고 있어 소방기관에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현재 소방관서의 사법경찰관리 지정현황은 소방법상 소방사범사건송치를 위하여 조사계 2·3(계장, 조사담당, 현장조사), 소방계1(감찰담당), 기타 2명(서장, 소방행정과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화재현장조사 담당자중 1명은 사법경찰관리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법규상 소방조직은 건물허가·준공 등의 업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설비 등에 대한 소방검사, 화재예방 및 방화관리지도 등 화재진 예방활동, 화재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출동체제와 화재진압활동과 동시에 발화지점 및 초기연소상황 파악, 현장활동 및 증거확보를 위한 비디오 촬영 등 화재관련 업무를 소방에서 전담하고 있음에도 화재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화재원인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²⁸⁾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본법 제29조의 개정에 의해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화재조사분석팀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소방방재청(www.nema.go.kr),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 참조].

²⁹⁾ 남상욱, “화재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대책,” 21세기 소방방재의 현안과 당면과제(토론회자료집), 소방프런티어·국회소방방재정책연구회, 2002. 4. 29, 24면.

화재원인조사시 실화를 가장한 방화사건이라는 심증이 깊은 화재도 소방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여 화재원인규명을 경찰수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경찰기관의 수사인력부족으로 소방기관과는 상반된 원인을 제시하거나 과학적이며 정확한 화재원인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³⁰⁾

3.3 화재조사와 수사체계의 개선 방안

3.3.1 인적·물적 측면

(1) 화재조사 전담부서 및 화재전문연구기관 설치
어느 분야의 조직이든 그 조직운영 및 발전에 있어 전문성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소방행정의 신뢰성, 공신력의 확보는 각 조직 상호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작용 및 전문조직과 인력에 의한 집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도 및 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³¹⁾

원인불명의 화재에 대한 판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하게 축적한 경험이 있어야 정확한 발화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재원인조사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는 화재조사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방서의 화재조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 사례를 연구하고, 화재조사 및 감식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에 대한 감식·감정업무의 지원을 통하여 화재예방의 과학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방·실화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러한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기관에서 방·실화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및 방화범죄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방화범죄를 통제·예방·수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검거율 및 방화범죄 감소율을 가져올 수 있다.³²⁾

(2) 화재조사와 수사의 전문인력 확보

조직의 발전은 조직구성원의 자질과 능력에 기인하고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루

어진다. 현재 중앙소방학교에서 운영 중인 화재전문가 과정의 경우 이론적 과목에 치중되어 있고, 실무적인 과목은 배정시간이 적어 현장에서 화재조사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채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화재조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전기·화공·기계 등 분야별전문가를 특별채용 한다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하여 얻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조사에 정확성을 기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 일선 소방관서 화재조사요원의 부서배치 운용현황을 보면 전문교육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문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대상자를 화재조사와 관련한 전공자로 엄정하게 선정하고 소방공무원 임용관련규정에 전문교육 이수자는 일정기간 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경우 경찰과 소방이 합동수사를 하는 체계이지만, 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소방관들은 경찰이 사건현장에서 소방관련법보다 형법이 우선하여 경찰관이 조사를 주도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경찰관들도 전문수사요원의 부족, 법정소송에 휘말릴 우려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³³⁾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도 화재조사 전문가의 육성과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3) 과학적 화인조사를 위한 장비·기구의 확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과학화와 함께 유용한 화재감식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화재조사·감식의 정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감식 기자재를 확보하여 조사전담 직원들의 기자재취급능력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화재감식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무리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과학적 조사를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면 전문인력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특히 화재의 경우 기상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

³⁰⁾정찬택, 앞의 논문, 91~92면.

³¹⁾화재조사전담부서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태근, “화재조사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19면 참조.

³²⁾안성일, 앞의 논문, 20면.

³³⁾안성일, 앞의 논문, 20면.

므로 정확한 기상조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서 및 소방과출소마다 풍향·풍속계, 온도·습도계 등 기상 관측 장비 및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상상황을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화재원인조사에 활용하도록 하여 화재원인조사의 과학화를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

3.3.2 운영적 측면

(1) 화재조사 보고체제의 개선

화재조사 보고체제에 기인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방관서와 보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상급소방관서에 화재조사관련 보도담당부서 설치 등 보도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예외적인 발표자료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보고독촉의 문제점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종보고서 작성의 정정 보고체제의 활성화이다. 화재조사의 생명이 과학적·객관적 타당성에 입각한 정확한 조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운영여건상 판정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성에 접근한 조사자료의 확보로 장기적인 소방행정 추진의 타당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정 보고체도를 활성화하여 소방기관의 화재조사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 피해액 산정의 현실화

현행 화재피해액 산정방식은 피해액 추소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피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통해 화재피해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액을 산정할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방관서의 피해액 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의 화재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재피해액의 조사에 있어서도 간접피해까지도 피해의 범주에 포함시켜 소방관서에서 조사한 피해액과 보험회사가 조사한 피해액이 근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화재조사와 수사 관련기관의 협력강화

전문과학기술이 바탕되는 화재원인조사를 실행함으로써 기존 비과학적 조사관행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학이론과 현장경험이 조화되는 화재원인조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화재조사와 수사관련기관간 협력전문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소방과 경찰의 경우에는 화재발생과 동시에 시작해서 산화정리가 마무리되기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속의 비상설기관을 설치하여, 방·실화 등 문제가 농후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방과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발생한 화재가 소방 또는 경찰로 해결하기엔 문제의 소지가 남게 되고 전문기관의 개입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때 공인 전문기관을 참여케 함으로써 화재원인조사 업무에 공신력을 확보하여 화재피해자의 불만을 종식하고 사회불안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는 감식기법에 대한 합동 연구 등을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경우에는 전기화재에 대한 자문 및 합동조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경우에는 가스화재에 대한 자문 및 합동조사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기타 화재조사 관련 대학연구소 및 민간단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방화범죄의 경우에는 소방, 경찰, 보험회사 등과의 협력이 없이는 그에 대한 수사 및 대책마련이 어렵다. 그러므로 방화의 의심이 있는 화재에 대하여는 소방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도 보험가입자에 대한 각종정보를 토대로 하여 보험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경찰과 공조하여 엄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방화의 예방을 위해서도 소방기관 및 경찰기관의 대응노력과 함께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 방화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보험회사의 관련법규를 재검토하는 등의 관련기관의 협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³⁴⁾

(4) 대형화재시 수사대책

대구지하철화재참사사고를 계기로 하여 대형화재참사시 이에 대한 완벽한 수사대책이 요구된다.³⁵⁾ 대구지하철화재참사사건의 경우 사고발생초기에 경찰이

³⁴⁾안성일, 앞의 논문, 20~21면 참조.

³⁵⁾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중앙로역 구내에서 50대 남자가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12량의 지하철 객차를 빼대만 남긴 채 모두 태워버린 대형참사가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50대 중반의 한 정신지체장애인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다 판단착오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열차는 완전히 불에 타 빼대만 남았고, 중앙로역 천장과 벽에 설치된 환풍기, 철길 바깥쪽 지붕들도 모두 녹아 내려 역구내는 순식간에 이수라장으로 바뀌었다. 출근시간이 지나가는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타고 있어서 인명피해도 엄청나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상황을 바로 보고 받아 이를 검토하여 미진한 사항 및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수사하도록 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체제로 운영하였으나, 사고관련 모든 상황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시 검찰, 경찰, 소방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검찰이 전면에서 나서서 적극적·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사고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파악하여 긴급상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사태수습 및 해결에 보다 효율적이고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형참사사건 현장은 수사의 출발점이자 ‘증거의 보고’라 할 수 있으므로 현장보전은 수사초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증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관계자 중에서 현장보존 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보존과 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체감식, 화재감식, 유류품감식 등 모든 현장감식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게 하여 검사의 지휘 및 승인 없이는 사고현장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³⁶⁾

3.3.3 법제도적 측면

(1) 화재조사법 제정

화재조사는 공신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화재원인 및 피해사항에 대한 분쟁과 법정에서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의 목적과 범위 및 조사의 기법과 방법, 조사의 주관기관과 협조 및 지원기관의 구분과 조사기관의 권한과 의무, 조사내용의 공개와 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제반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아울러 대 내·외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위해 화재조사법(가칭)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화재조사법(안)에 포함시키고, 화재원인조사의 체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화재피해액 산정요령도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각 기관마다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조사기관간의 관계법령 통합과 이에 따른 조사기준과 방법을 통일하여 화재와 관련한 각 조사기관마다 다른 화재조사결과를 일치시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화재조사요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

소방기관이 화재조사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소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실화법의 처벌에 관한 사법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³⁷⁾ 화재조사 소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법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³⁸⁾

첫째, 화재관련 범죄수사는 검찰, 경찰, 소방의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므로 소방기관에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증거확보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둘째, 화재의 대부분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의 미이행이나 안전시설 미비 등의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실화인 점을 고려할 때 화재예방을 담당하는 소방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화재의 예방·진화 및 조사업무까지도 일임시킴으로써 업무를 일관성 있게 다룰 수 있다.

셋째,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방화범죄에 대비하여 기존의 수사력을 전담배치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방에서도 이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면 방화범 검거가 더욱 용이해 진다.

넷째, 업무처리 효율성 면에서 불 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지닌 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고, 방·실화법에 대한 수사업무는 현실적으로 화재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일이며, 나아가 경찰의 업무분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소방관련법령의 제정취지를 실화 방지 안전

³⁶⁾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참사 수사백서, 2003, 81~82면 참조.

³⁷⁾행정법인 소방관련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수사하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받은 소방공무원에게 형법이 규정한 일반범죄인 방·실화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소방관련 법상 저촉되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소방관련 범죄 중에는 형법상 방·실화와 유사한 범죄, 예컨대 ‘고의로 소방자동차 통행을 방해한 범죄’(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소방시설 손괴 화재진압을 방해한 범죄’(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호),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등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³⁸⁾정찬택, 앞의 논문, 102면; 이춘하/권오한/남상화, “화재조사 및 수사 업무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15권 1호, 한국소방화재학회, 2001. 3. 참조.

시설 등의 설치유지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에 들 때, 소방관서는 이를 근거로 관할 내의 화재예방, 관계자 안전지도, 화재진압 등의 관련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실화범에 대한 수사권한은 가지지 못하여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책임이 있는 소방기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일관성 있게 업무의 책임이 있는 소방기관에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게 하는 것이 효율성과 사회정의 실현의 맥락에서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화재조사와 수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수사요원을 양성하고 이를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여야 한다.³⁹⁾

4. 결 론

화재조사는 소방행정 중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분야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으로 소홀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화재조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전담기능이 부족하고 선진화된 종합적 학술과 경험 등의 보급이 미흡하여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와 수사체계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무엇보다 화재조사와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와 수사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며, 물적으로 과학적 장비들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와 수사에 있어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조사 소방공무원에게도 발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여 화재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유기적으로 화재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김만우, 화재조사, 신광문화사(2004).
2.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2005).
3. 양태규, 과학수사론, 대왕사(2004).
4. 중앙소방학교, 테마 소방학 강의(2001).
5. 대검찰청, 과학수사편람(1993).
6.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참사 수사백서(2003).
7. 소방방재청, 2005년도 화재통계연감(2006).
8. 남상욱, “화재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대책,” 21세기 소방방재의 현안과 당면과제(토론회자료집), 소방프린터어·국회소방방재정책연구회(2002. 4. 29).
9. 박창순, “화재조사 및 수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5호, 한국경찰학회(2002).
10. 안성일, “방화현장의 실태,” 수사연구, 수사연구사(2006. 1).
11. 우성천, “PL법 시행에 따른 화재조사행정의 개선방안,” 중앙소방학교(www.fire.or.kr) 자료실.
12. 이상호, “화재원인조사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소방학교(www.fire.or.kr) 자료실.
13. 이창화, “화재조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14. 이창화, “화재조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소방학교(www.fire.or.kr) 자료실.
15. 이춘하, 권오한, 남상화, “화재조사 및 수사 업무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한국소방화재학회(2001. 3).
16. 이태근, “화재조사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6).
17. 정찬택, “방화·실화범의 수사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18.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 업무 발전방안,” 중앙소방학교(www.fire.or.kr) 자료실.
1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www.nisifire.com.
20. 중앙소방학교, www.fire.or.kr.
21. 소방방재청, www.nema.go.kr.

³⁹⁾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에서 공적인 권위를 확보하여 전담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일선 시·군의 소방서장은 화재, 방화, 폭발 등의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1차적인 조사는 Fire Marshal(예방과장에 해당)이 행하게 되며 그의 산하에 보통 2~3명으로 구성된 화재수사팀(Fire Investigation Unit of Team)이 2~3개조가 있고 실제적으로 수사담당 State Fire Marshal(주 정부의 화재방호담당관) 산하에 수명의 화재수사관이 있어 시·군의 화재수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화재수사는 주 정부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나 실제적으로 시·군 소방서에서 담당하게 되어 경찰의 수사권은 배제되고 있다. 다만 화재, 방화, 폭발과 관련하여 타 범죄와의 경합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이 경합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하며 소방과 경찰은 서로 협조하여 각각 담당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각국의 화재조사 및 수사제도에 대해서는, 박창순, “화재조사 및 수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5호, 한국경찰학회, 2002, 40~42면 참조).